

군유 행정재산(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) 무상사용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85 |
|----------|-----|

제안연월일 : 2024. 05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은 평창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령원예농협에서 22년간 운영되어왔던 시설로써,
- 평창군에서 위 시설의 사용에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까지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치 :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726-1
- 관리주체 :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유통정책팀
- 수탁기관 :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
- 위탁기간 : 2024. 6. ~ 2029. 5.(5년)
- 사용목적 : 농산물 산지공판장 관리위탁 운영
- 위탁금액 : 무상사용

※ 법적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

○ 이목정리 산지공판장 현황

| 재산의 표시 | | |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소재지 | 지번 | 구분 | 면적(m ²) | |
| 용평면 이목정리 | 726-1 외 2필지 | 건물 | 7,806.84 | |
| | | 토지 | 19,513 | |

○ 무상사용 범위 : 4,401.9m²(사무동 1,044m²/ 창고 및 경매동 3,357.9m²)

| 사용 용도 | 건물면적 (m ²) | 실 사용목적 | | 사용면적 (m ²)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7,806.84 | | | 7,806.84 | |
| 사무동 | 1,044 | 1층 | 식생활 교육문화체험장 (리모델링 완료) | 242.1 | 무상사용 |
| | | | 기타 (로컬푸드 직매장 추진 중) | 279.9 | |
| | | 2층 | 대관령원예농협사무실 (위탁기간: 1.1.~12.31.) | 242.2 | |
| | | | 기타(미사용) | 279.8 | |
| 창고 및 경매장동 | 3,357.9 | 농산물하역장 | | 1,040.4 | |
| | | 저온저장고 | | 288 | |
| | | 판매시설(경매장) | | 2,029.5 | |
| 공장동 | 3,404.94 | 재단법인평창푸드통합 지원센터 사무실 | | 3,404.94 | |

○ 운영계획

- 식생활 문화체험관 및 로컬푸드 직매장 재단법인 운영(7월)
- 기타 산지공판장 시설은 「이목정공판장 활용방안 수립 용역」
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

○ 검토의견

- 현재 운영중인 재단법인 급식센터와 산지공판장 일대 단지의
기반시설(전기, 소방 등)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
주체가 필요하며, 향후 산지공판장 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재단
법인에서 운영할 예정이므로 재단법인에 무상 사용허가를 통한
체계적인 운영 관리 도모

3. 향후계획

-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체결 및 시설 운영 : '24. 6.

4. 참고사항

-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관계법령 발취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2. ~ 3. 생략
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- ①~④ 생략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
 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5조(심의회회의 업무)

① 심의회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<2008.10.17.>
3.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- 10.~11. 생략